

# 아동수당제도에 관한 워크숍

(제 7차 평등정책 콜로키움)

장소: 한국여성개발원 본관 3층 회의실

일시: 2006년6월28일 수요일 오후 3시-5시

한국여성개발원  
평등정책연구실

# 목 차

## 1. 아동수당의 개념과 필요성

가. 아동수당의 개념

나. 아동수당제도의 근거 및 필요성

1) 아동수당제도의 도입근거

2) 한국의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3)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

## 2. 아동수당제도의 각국 현황 및 국제비교

가. 주요국의 아동수당제도 현황

나. 일본, 프랑스, 핀란드 사례

## 3. 아동수당의 도입방안

참고문헌

# 1. 아동수당의 개념 및 필요성

## 가. 아동수당의 개념

- 아동수당제도는 현대복지국가의 주춧돌을 이룬 주요 제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Authier and Monna 2004).
- 아동수당(child benefit)은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가족수당(family allowance or family benefit)<sup>1)</sup>이라고도 불림.
- 본 연구에서는 아동수당을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 지급되는 사회적 급여(social benefit)로 정의함.
- 아동수당제도의 분류기준<sup>2)</sup>

### ◇ 제도종류 및 적용범위(Types of Systems and Coverage)

#### ○ 보편주의 (universal type)

- 
- 1) 가족수당은 국가에 따라서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피부양자인 배우자를 위해 지급되기도 함으로 엄격한 의미에서 아동만을 위한 수당은 아닐 수 있음(OECD 2004). 그 예로 이태리의 가족수표(household cheque)는 아동만이 아닌 가족구성원 모두를 보조하는 제도이다. 가족의 크기에 따라 금액은 다르며 저소득 근로자나 실업수당을 받는 무직자, 이전의 저소득혜택에서 자격을 만료한 자에게 지급됨 (Bradshaw and Finch 2002).
  - 2) S. Roddis and Z. Tzannatos (1999) 'Family Allowances', *Social Protection Discussion Paper Series*, the World Bank.

특정수의 자녀가 있는 모든 자국 거주 가정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임.

○ 고용관계 (employment-related)

모든 임금 소득자와 특정 경우의 자영업자에게 지급됨.

◇ 재원(Source of Funds)

○ 보편주의

보통 일반 세입에서 총 비용을 부담함.

○ 고용관계

- 지급 자격이 고용과 연관된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수당 비용의 전체 또는 상당부분을 일정 지불급여 비율로 책정되는 고용주 부담금에서 부담함.
- 고용주 부담금으로 전체 비용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통 잔여금을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함.

◇ 자격조건(Eligibility)

○ 가족규모 또는 가족소득에 따라 구분됨.

- 많은 국가들이 첫 자녀를 출산할 때부터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함.
- 연령 조건은 국가에 따라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학령의 마지막 나이, 혹은 최소 노동연령인 만16세부터 만18세 까지로 규정함.
- 대부분의 제도에서 자녀의 학업이 지속되거나 견습 및 직업 교육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제한 연령을 연장함.
- 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많은 나라들이 지속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한 연령을 연장하거나 수당을 무기한으로 지급함.

◇ 급여(Benefits)

- 도입의 취지에 따라 급여가 달라짐
- 모든 자녀수에 따른 수당비율의 변화
  - 모든 자녀에 동일 비율 적용: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음
  - 추가 자녀의 증가에 따라 감소 또는 증가
- 아동수당제도는 크레딧(Credit)등의 세금제도로 대신하거나 보충함.

◇ 담당기관(Administration Organization)

- 정부  
아동수당이 모든 가족에게 적용되고 일반 세입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부 부처에서 본 제도를 운영함.
- 반(半)자율적 기관  
수당이 취업자 가정에 지급되고 자금을 고용주 부담금에서 조달하는 국가에서는 공공기관의 감독하의 반(半)자율적 기관(semiautonomous agency)에서 제도의 운영이 이루어짐.

## 나. 아동수당제도의 도입근거 및 필요성

### 1) 아동수당도입 근거

#### 가) 아동복지권의 실현

-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인 사회보장권은 시민권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자유와 평등이념 실현의 기반이 되는 공민

권과 정치권의 현실적 실현을 위해 반드시 보장받아야만 하는 중요한 권리임.

- 사회(보장)권에 대해서는 그 의미와 중요성, 다른 권리와 관계, 법적 권리로서의 성격 등에 관한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예를들어, 김형식, 1995; 박순우, 1995; 안치민, 2003; 강철희·홍현미라, 2003), 이러한 논의는 주로 성인의 사회권에 국한되어졌으며 아동의 사회권은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주요한 쟁점이 되지 못함.
  
- 아동의 인권, 특히 아동의 고유한 기본권으로 성장발달권에 대한 논의(권영복, 2003)에 따르면, 아동은 생존과 적절한 성장 및 발달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동시에 이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사회의 특별한 보호, 원조 급여를 필요로 함.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 10조),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권리까지도 경시되지 않음을 규정한 헌법 제 37조 1항, 그리고 국가의 청소년복지정책의 실시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 34조 4항의 내용이 이러한 아동의 성장발달권과 관련된다고 봄.
  
- 특히 1989년 UN의 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모든 형태의 차별금지원칙, 최선의 이익존중원칙, 생존 및 발달보장의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아동의 사회(보장)권의 보장을 강조함. 이 협약의 6조에서는 아동의 생존 및 발달을 보장해야함을 명시하였고, 그 밖의 여러 조항에서 아동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규정 포함하고 있음. 제 24조에서는 의료보장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였으며, 제 26조는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명확히 하면서, 국내법이 이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제 27조는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규정하고, 제 28조는 아동의 교육권을, 제 19조는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권영복, 2003; 윤진수, 2005).

- 경제적 자원의 측면을 포함하여 여러 면에서 양육환경의 차이가 크고 최근 들어 그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차이를 적극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아동양육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필요성이 큼.
-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자원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이들이 마땅히 누려야만 하는 공민권과 정치권을 명목적 권리가 아니라 현실적 권리로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전 국민의 공민권과 정치권을 충실화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동의 권리신장이라는 관점에서 실행되어온 정책들은 아동의 권리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하여 아동학대의 예방이나 아동의 안전교육,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 미아찾기지원 등의 사업으로 국한되어져 온 것이 사실임(보건복지부, 2005).
- 아동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정의하여 모든 아동들이 적어도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 최소한 누려야할 환경을 마련해주는 정책이 실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보장을 제공하는 아동수당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

## 나)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sup>3)</sup>

- 아동수당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복지적 관점에서의 체계화는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음. 이 보고서에서 베버리지는 기여중심의 사회보험과 자격중심의 공공부조제도를 통한 사회보장제도의 완벽한 실현이 포괄적인 보건과 재활서비스, 고용의 유지, 그리고 아동수당 확보라는 3가지 전제조건위에서 가능하다고 봄.
  
- 이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중심의 기초소득보장과 보건복지서비스 중심의 기능보장 모두가 가족구성원을 구성하는 개별인원이 아닌 “아동”의 특성을 반영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 즉, 사회보장프로그램들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간의 경제적 부담의 차이를 완화해줄 수 있도록 제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편적 급여제공방식의 아동수당이 채워주어야 한다고 봄.
  
- 결국 아동이 있는 가족과 없는 가족 간-그리고 아동의 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가족간-의 경제적 부담의 차이를 줄여주고,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기초소득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이 논의된 것인데, 이는 자녀의 유무나 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지우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공정성의 관점과 함께, 아동양육에 드는 기본적 비용에 근거, 이 비용을 사회적으로 부담함으로써 아동을 둔 가족의 양육비용을

---

3) 여성의 사회적 권리의 측면에서 아동수당(가족수당)제도를 분석한 연구(김수정, 2002)에서는, 가족수당이 역사적으로 발달되어오는 과정에서 여성의 양육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라는 측면이 제도 도입의 주요한 근거가 되었으나 최근 들어 이러한 성격은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고 보았음.

전 사회가 분담함으로써 사회적, 공적 자원으로서의 인적자본 개발에 대한 사회연대적 책임강화도 아동수당의 제도적 근거로 지적됨.

#### 다) 인구사회학적 변화: 저출산과 고령화

- 미래 노동력의 수를 확보하고 이들이 건실하게 성장하게끔 하기 위해서도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 지원이 필요함이 주장되고 있음. 출산율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그 직접적인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밝혀내기는 매우 어려우나, 아동양육의 총체적 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차원의 아동양육지원 급여 중 하나로서 현금급여의 형태가 필요하다는 것임.
  
-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서, 대부분의 서구국가의 출산력이 1.50을 전후로 안정적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1.08이라는 최저의 합계출산력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극단적인 저출산의 원인으로 자녀양육의 고비용 문제, 성차별적 노동환경 및 성불평등적 양육부담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장혜경 외, 2004), 이러한 원인이 되는 현상들은 상호간에 총체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함.
  
- 결국 자녀를 양육하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인데, 자녀양육 환경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정책적으로 제공되어야만 하는 다양한 급여들-아동을 위한 총체적 급여 (child benefit package) 중,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적인 현금수당은 그것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자녀양육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의 하나로서 아동수당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

## 2) 우리나라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 아래에서 제시되는 아동을 위한 총체적 급여에는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양육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제공해주어야만 하는 급여의 주요 내용이 포함됨(Bradshaw & Finch, 2002).
  - ① 산전산후휴직, 육아휴직, 간병휴직 등을 통한 초기 보살핌 보장
  - ② 보육 및 교육 보장
  - ③ 의료보장
  - ④ 주거보장
  - ⑤ 세금을 통한 지원 및 현금지원
  - ⑥ 공공부조를 통한 기초소득보장
  
- 대부분의 복지국가는 정책에서의 강조점의 차이, 1996년 이후의 정책적 변화의 방향, 특정 사회의 사회보장제도의 제도 상황 등에 따라 이상 6가지의 급여 내용들에 있어서 상대적 비중이나 제도 운용방식에 차이가 있고 다소 변형된 형태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위의 6가지 영역에서의 아동을 위한 총체적 급여를 정책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①, ②를 중심으로 아동에 대한 지원정책이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아동양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③,④의 급여는 매우 적으며 ⑤에 해당되는 급여 중 세금관련 지원도 미비하며 현금지원제도로서의 “아동수당”제도는 현재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음. ⑥의 사회보장영역에서는 가족전체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2000년 이후 다양한 급여들이 신설되고 급여대상자 선정의 기준도 완화되어 보장기능이 확대되었으나, 아동의 수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제공되는 급여는 없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 우리사회가 점차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중요 정책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도모하고, 가정과 일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법의 개정이 이루어짐.
-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여성의 경우는 고용보험에서 90일 간의 급여가 지급되면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비용의 사회화가 더욱 확대됨.
- 개정된 법에 의하면, 대규모기업은 개정된 이 법에서 제외되며,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적용됨(노동부 [www.molab.go.kr](http://www.molab.go.kr)).
- 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월 13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만약 지급액이 월135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고용주가 그 차액을 지불하게 됨.
- 육아휴직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부모 중 한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의 이용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이지만, 휴직기간 동안의 가구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6년 월40만원의 급여가 지급하고 있음. 그리고 사업주에게

는 육아휴직 장려금을 월20만원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월 20-30만원이 지급됨.

- 2005년12월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육아휴직의 요건을 확대하고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됨. 이 개정된 법(제19조제1항)은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부모에게 적용되던 육아휴직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부모에게까지 확대 적용되도록 함.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기존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영유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9조제2항). 이 법은 2008년1월1일 출생한 영유아부터 적용됨.

#### 나)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 대부분의 나라들은 특정 연령대 이하의 아동들에게 보편적인 보육비 지원을 그 이상 연령대의 아동들에게는 교육비 보조를 제공하고 있음. 정책적으로 볼 때 보육(childcare)과 조기 (유아)교육 (early education)은 구분되어야만 하는데, 보육은 대개 부모대신 아동을 돌보아주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의미하며, 조기교육은 공교육 기반에 근거하여 아동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보육이 교육적 내용을, 교육이 보육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제공하기 때문에 내용과 기능상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함.
- 많은 나라들이 일정 정도 이상 연령 (2세 or 3세 이상/ 0세부터 제공해주기도 함)의 아동들에게 보육서비스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3세 미만 아동의 경우 친척이나 친지에 의해 행해지는 보육과 같은 비공식적인 제도를 통한 보육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며, 보육비용의 지원은 현금을 통한 지원정책이 신설되거나, 소득과 연계하여 시설이용료

를 지원하거나 보조이용료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이 실행되거나, 보육비에 대한 세금공제를 통해 보육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Bradshaw & Finch, 2002).

-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보육 지원과 교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치원이 유아교육(early education)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교육서비스를 우선으로 보육서비스를 같이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보육시설은 보육을 우선적인 기능으로 하며 교육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보육과 교육에 대한 지원에서 연령별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음.
- 현재 우리나라는 보육에 대한 지원과 초기교육에 대한 지원을 묶어서 “육아지원” 정책으로 포괄하고 있는데, 정책대상의 연령은 0세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와 6세에서 8세까지의 아동으로 구분하고 있음.
- 세분하면 0~2세까지는 영아보육지원으로, 3~5세까지는 유아보육과 유아교육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6~8세는 방과후 교육지원이 이루어짐. 이렇듯 육아지원의 가장 핵심적 대상연령인 3~5세 아동에 대해 보육과 교육지원이 같이 제공되며 정책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혹은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3~5세 아동 중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전체의 31%, 유아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29.1%인데, 이렇듯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구분이 희미할 뿐만 아니라 시설별로 프로그램의 질적 차이가 커서 보육과 교육의 내용이 상호 혼재하면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대통령자문 고령화 및미래사회위원회, 2004).

- 보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현황을 보면 시설별 지원과 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아동별 지원이 있음. 시설별 지원은 국공립 및 법인시설의 인건비 지원, 그리고 영아나 장애아, 시간연장형, 휴일, 방과 후 보육 등과 같은 특수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되며,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세제상의 지원도 있음.
  
- 한편 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아동별 지원은 0~4세 사이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과 만 5세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이러한 지원은 현재 소득과 연계해서 주어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보육료 전체를 지원받고 그의 저소득층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해서 보육료를 지원받음. 현재 최저생계비 수준의 120% 소득에 해당되는 차상위계층은 전체 보육료의 80%를 지원받고, 150% 수준의 차상위계층은 60%, 180% 수준의 가구는 보육료의 30%를 지원받음(여성부, 2006). 2005년 현재, 보육시설 이용 아동 중 국가로부터 보육비 지원혜택을 받는 아동은 50% 정도 수준임.
  
- 교육지원의 경우 유치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없고,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시설운영 지원비가 있으며, 교구교재비 지원 등의 기타 지원비가 있음. 반면 사립유치원에는 시설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고 단지 교재비 지원만 있음. 부모의 부담경감을 위한 아동별 지원은 기존 만 5세 아동만 지원하던 것에서 2004년부터 만 3,4세까지 지원 연령층을 확대하였으며, 보육료 지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소득과 연계하여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음.
  
- 이상의 보육지원 및 교육지원을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우선, 연령별로 볼 때 보육 및 교육비 지원이 3~5세 아동에

집중되어 있어서, 0~2세 사이의 보육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며 취학연령 이상의 아동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취약함.

- 다음으로, 보육 및 교육비 지원이 시설이용 아동에게 국한되어 있어서, 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없음. 보육이나 교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혈연, 혹은 비혈연으로부터) 보육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임.

#### 다) 주거지원 및 의료지원

- 현재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주거지원 급여는 전무하다. 단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동일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수에 대한 가점부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간접적으로는 자녀의 유무나 자녀의 수와 관련된 주거지원의 형태라고 볼 수도 있으나 부양가족에는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원이 다 포함될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음.
- 다만, 빈곤한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일환으로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나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자격을 주는 사업 등이 현재 추진중임(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4).<sup>4)</sup>
-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건강보험에서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을 면제해주고 있으며, 이에 의료급여 대상

4) 한편, 출산을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다자녀 가정을 중심으로 주택구입비 지원제도나 모기지 감액제도, 전월세 지원제도의 실시가 필요함이 제기되고 있으며(장혜경 외, 2004), 최근 발표된 “2006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 무주택 다자녀가정에 대해 공동주택 우선 분양권을 주고,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다자녀 무주택 가구를 포함시키는 안을 제시하였음.

아동의 경우도 동일연령에 한해 입원진료시 본인부담이 면제됨(보건복지부, 2005).

- 또한 2005년부터 차상위계층 중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의 지원을 시행하였는데, 최근 들어 지원 아동의 연령을 18세까지로 상향조정하였음.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도 현재 시행중 임.<sup>5)</sup>

#### 라) 세금혜택과 현금지원

- OECD 국가를 대상으로 2002년에서 2003년 사이 중산층의 조세부담율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독신근로자와 부부와 자녀2명으로 구성된 4인가족의 조세부담 차이가 10%가 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그 차이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이삼식 외, 2005). 즉, 많은 나라들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세금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여 자녀양육비용을 간접적으로 보조해주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혜택이 거의 주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임.<sup>6)</sup>
- 세금혜택을 통해 자녀양육을 지원해주는 현행제도를 살펴보면, 기존 자녀 1인당 100만원의 소득공제 외에 2004년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출산 및 보육수당에 대해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6세이하 자녀에 대해 추가로 100만원 소득공제, 영유아 교육비에 대해서도 200만원까지 소득공제-6세이하 추가 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를 받을 수 있음. 또한 초중고생 교육비로 1인당 200만원까지 소득세 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아동 특수교육비는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함.

5) “2006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육아휴직자와 다자녀 가정의 건강보험료를 줄여주는 방안 마련을 제외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제시하였음.

6)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양육에 관한 세제지원으로 과세표준금액에서 일정한 소득액을 차감해주는 소득공제제도만 있으나 추가적으로 결정된 세액에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액수를 공제해주는 세액공제까지 실시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음(재정경제위원회, 2005).

□ 또 다른 특별소득공제로서 자녀를 위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함(재정경제위원회, 2005). 이렇듯 현재 보육비용을 포함한 자녀양육비용과 교육비용 등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이 다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sup>7)</sup> 이상과 같은 자녀양육비 지원 차원에서의 자녀소득공제제도가 자녀양육에 따른 제반 비용을 적절히 보전하지 못한다는 비판 하에 자녀의 출산이나 양육에 대한 직접적 비용을 조세혜택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더 분담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 납세자의 비율이 낮고 소득세 부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으며, 추가적인 세금혜택은 면세점 이하의 가정에게 혜택이 없고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역진적인 소득재분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함(재정경제위원회, 2005).

□ 보편적인 형태로 아동양육을 지원해주는 직접적 현금지원은 없으나, 몇몇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양육에 대한 현금급여가 있음. 가장 일반적인 아동양육관련 현금지원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정에 중등학교 재학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주어지는 교육급여임. 교육급여는 입학금이나 수업료, 그 밖의 교과서대나 부교재비 등의 일부에 대한 지원을 포함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에 1급 장애를 가진 아동이 있을 경우 월 5만원의 장애아동부양수당이 지급되며, 저소득층(최저생계비의 약

---

7) 한편 현재 정책적으로 고려중인 근로소득세보전제도(EITC) 등이 실행되게 되면, 아동수를 고려하여 세제상의 혜택에 차등을 두는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아동양육에 대한 직접적 지원의 폭을 넓힐 수도 있다. 그 밖에 “2006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공적연금에 아동양육에 관한 크레딧을 줌으로써 아동양육을 지원해주는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130%이하의 소득층) 장애인가족-부모가 장애인이거나 아동이 장애인인 경우 모두-을 대상으로는 중등학교 이상 재학하는 자녀의 교육비(대체로 입학금과 수업료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함.

-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경우 6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월 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자녀가 중등학교 이상일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의 일부 혹은 전부를 포함하는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보편적인 방식으로 아동양육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현금 급여인 아동수당이 제공되고 있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다수의 정책연구들이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음(예를 들어, 장혜경 외, 2004; 이삼식 외, 2005; 이재인 외, 2005).
- 아동수당은 그 사회의 여타 사회보장제도의 성격과 수준과의 관련성 속에서 소득연계방식 혹은 전 계층에 대한 보편적 접근방식을 취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아동빈곤을 감소시키는 기본적인 제도로서의 역할을 하며 장기적으로는 전 계층 아동의 인적자본의 질을 제고하고 아동복지를 실현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이에 아동수당제도의 실시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음.

#### 마) 기초생활보장 지원

- 많은 나라들이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자녀의 유무나 수를 고려하여 급여대상자를 선정하거나 부가급부를 제공해주고 있음. 물론 자녀뿐만 아니라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실업여부, 장애여부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하여 수급자격과 수급액을 결정하지만, 자녀의 유무나 수도 급여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많은 공공부조 프로그램들이 수급대상자 선정시 자녀유무를 고려하며, 프랑스나 노르웨이 등은 한부모가정을 주 대상으로 하여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 특정 프로그램의 혜택은 자녀의 연령에 제한을 두기도 함(Bradshaw & Finch, 2002).

-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공공부조 프로그램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선정시 두 가지 기준, 즉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만을 사용하고 있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가족원수를 고려하지만, 아동의 수를 따로 고려하지는 않고 있음.
- 이러한 결과,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빈곤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은 1996년 3.6%에서 2004년 현재 9.3%로 크게 증가한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공공부조를 수급하는 아동은 2004년 현재 여전히 전체아동의 3.4%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2006), 우리나라의 현행 공공부조 제도가 기본적인 아동빈곤 문제의 해결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유일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가정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를 제공해주며, 이러한 급여들의 총합은 가족원수를 고려한 최저생계비에서 그 가족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음.<sup>8)</sup>

---

8) 가구별로 수급할 수 있는 생계급여의 금액은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에서 타지원액을 뺀 현금급여기준액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감하고 여기에 주거급여를 감한 만큼의 금액임.

- 현행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아동양육과 관련된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고 가계 총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달되는지의 여부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아동양육에 대한 개별 가정의 욕구가 제도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못함. 최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시 급여종류별 특례제도가 활용되고 있는데-예를 들어, 자활특례, 의료급여 특례 등- 아동양육과 관련하여 특정 연령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양육지원 특례 방식으로 저소득층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음.

### 3) 아동수당의 필요성

-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복지권의 실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그리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책 및 미래 노동력의 확보하기 위한 총체적 정책급여의 주요 구성요소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도입의 근거를 찾을 수 있음.
- 이렇듯 아동을 건전하게 성장가능 하도록 양성하고 그러한 양육비용을 공정하고 집합적으로 부담함으로써 사회연대성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한 수준으로 미래 노동력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양육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이 필요함.
- 앞서 고찰한 다양한 형태의 아동양육 지원급여들은 모두 적절한 아동양육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책적 급여이기는 하나, 특정한 상황에 연계되어 주어지는 급여임.
- 즉, 출산급여나 육아휴직급여, 세금혜택 등은 부모가 취업하거나 근

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받게 되는 급여이며, 보육급여나 교육급여는 현재 보육시설이나 교육시설 등 시설을 이용할 때만 받을 수 있음. 또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그러한 특정 형태의 재화에 대한 욕구가 발생했을 때에만 받게 되는 급여임.

- 이렇듯 아동수당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아동양육 지원급여들이 특정한 상황에 연계된 급여들이라는 것에 비추어볼 때, 아동수당은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직접적 현금급여라는 점에서 다른 지원과는 차별되는 기능을 가질 수 있을 것임.
- 결론적으로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을 양육하는 개별 가정들을 지원하는 총체적 정책급여의 중요한 한 구성요소로서 제도 도입의 근거와 필요성이 논의될 수 있다고 하겠음.

## 2. 아동수당제도의 각국 현황 및 국제비교

### 가. 주요국의 아동수당제도의 현황

- 아동수당제도는 국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하고 있음.
- 크게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소득과 연계된 아동수당제도, 소득세와 연계된 아동수당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1) 보편적 아동수당

- 보편적 형태의 아동수당은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현금급여로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지불되는 제도임.
- 가족의 형태, 즉 양부모와 한부모 가족인가에 따라서 수당의 금액이 달라짐.
  - 덴마크와 프랑스는 한부모 가족을 위한 추가 현금혜택 제도를 가지고 있음.
  - 노르웨이는 한부모들이 실제로 부양하는 자녀수보다 한 명 더 많다고 간주해 이에 맞는 현금혜택을 줌.
  - 핀란드는 역시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KELA 2004).

#### ○ 자녀수 및 연령에 따른 차등화

- 아동수당제도는 그 도입의 목적과 배경이 어떠한지 간에 자녀수에 따라 급여액을 다르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

입.

- 출생순위에 따라 즉, 첫째자녀, 둘째자녀, 셋째자녀 그리고 그 이상에 자녀에 대한 급여액 역시 달라짐.
- 자녀수와 더불어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등화도 나타남.
  - 덴마크는 자녀 연령에 따라 급여액을 다르게 정함: 한 자녀 당 만 2세까지는 1년에 13,204크로네가 만3세부터 만6세까지는 11,932크로네, 만7세부터 만17세까지는 9,388크로네가 지급됨(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2004).
  - 노르웨이 역시 아동이 만3세에 이르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급여를 다르게 지급됨.

#### ○ 연령제한

- 아동의 연령제한에 의해 수급자격이 결정됨.
  -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시기까지 또는 최소노동연령으로 하고 있음.
  -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아동수당수급의 연령제한은 만16·17세, 혹은 만 18세임.
- 일본에서는 아동의 연령제한을 초등학교수료까지인 만12세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룩셈부르크는 직업훈련 중이거나 교육을 받고 있을 때는 만27세까지 수당이 지급됨.

#### ○ 지급 대상

- 아동수당을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아동양육과 교육조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임.
- 아동을 돌보고 교육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여성인 어머니가 담당함(bradshaw and Finch 2002). 소득과 상관없는 아동수당은 일반

- 적으로 어머니가 수급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일본은 세대주가 수급을 하며, 룩셈부르크는 아버지가 아동수당을 받고, 자녀가 18세 이상이 되면 자신이 직접 수급함.

○ 재정구조

- 아동수당급여는 사회적 기여(social contribution)를 통한 분담형식 보다는 국가의 예산에서 지출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음.
- 덴마크, 프랑스,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노르웨이가 규칙적으로 아동수당의 급여액을 증가함. 이들 국가들은 상승의 기준을 물가지 수나 평균소득에 연동하여 마련하고 있음.

<표 1> 보편적 아동수당의 특징

국가 <sup>1</sup>	명칭	자녀 수	자녀 연령	가족 형태	연령제한	지급대상	상승여부	연동여부 (indexed)
오스트리아	familienbeihilfe	있음	있음	없음	만18세(전업학생인 경우 만26세)	어머니	정부결정에 따라 상승	아님
덴마크	bornefamilieydelse børnetilskud (한부모보조금)	있음	있음	없음	만 18세	어머니	정부결정에 따라 상승 매년 상승	평균 소득에 연동
핀란드	lapsilisa	있음	없음	없음	만 18세	한부모	매년 상승	평균 소득에 연동
프랑스	allocations familiales (아동수당)	있음	있음	있음	만 17세 이하 만16세(교육이나 직업훈련, 실업종일 경우는 만 20세)	어머니 양부모의 합의에 의해	정부결정에 따라 상승 매년상승	연동 안함 물가상승률에 연동
	allocations de soutien familial (한부모보조금)	있음	없음	없음		한부모	매년 상승	물가상승률에 연동
아일랜드	child benefit	있음	없음	없음	만16세(전업학생인 경우 만19세)	어머니	불규칙적으로 상승	연동 안함
이스라엘	child benefit	있음	없음	없음	만 18세	어머니	매년 상승	평균 소득에 연동
일본	児童手當(아동수당)	있음	없음	있음	만 12세	세대주	상승하지 않음	연동 안함
룩셈부르크	allocation familiales	있음	있음	없음	만 18세(직업훈련 중이거나 교육 중일 때는 만 27세)	아버지/ 18세	상승함	생활비에 연동
						이상의 자녀		
네덜란드	kinderbijslag barnetrygd	있음	있음	없음	만16세(전업학생인 경우 만18세)	어머니	정부결정에 따라 상승	연동
		있음	있음	있음	만 18세	어머니	매년 상승	물가지수에 연동 소득세에 따라 연동
스웨덴	barnbidrag	-	-	-	만16세(전업학생인 경우 그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자 (주로 어머니)	어머니	정부결정에 따라 상승	연동 안함
영국	child benefit	있음	없음	없음	만16세(전업학생인 경우 만16세에서 만19세)	제공하는자 (주로 어머니)	정부결정에 따라 상승	연동 안함

출처: Bradshaw and Finch (2002), A Comparison of Child Benefit Packages in 22 Countrie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2004), The Social Security System Throughout the World-Europe 2004.

KELA (2004), Statistical yearbook of the social insurance institution, Helsinki.

## 2) 소득과 연계된 아동수당

- 소득과 연계된 아동수당제도는 가구소득에 대한 특정 기준에 따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임. 그 예로 자산조사가 대표적 예임.
- 일부 국가는 보편적 아동수당제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와 더불어 가구소득과 연계된 아동수당제도도 가지고 있음.
- 스페인은 사회부조체계(social assistance system)로서 자산조사에 근거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2004).
- 이탈리아는 고용관련 아동수당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급여액은 가족의 크기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됨.

### ○ 자녀 수 및 연령에 따른 차등화

- 프랑스는 보편적 아동수당만이 아니라 자산조사를 통한 급여도 지급하고 있음. 이 가족소득에 대한 보조금의 성격을 가진 이 급여는 만3세 이상 만21세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에게 지급됨.
- 스페인은 사회부조 성격의 아동수당제도를 가지고 있음. 2004년 기준으로 18세미만의 자녀가 1명이 있는 가족의 연간 소득이 8,495.65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일년에 291.01유로가 지급됨. 추가자녀가 증가할 때하다 이 수당을 수급하기 위한 소득제한선은 15%씩 상승함(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2004). 자녀수에 따른 급여가 다르게 지급되지 않고 있음.

### ○ 근로상황에 따른 차등화

- 아일랜드의 가족소득보조금은 오직 직업이 있는 부모의 가정을 위한 것임. 그리고 한부모 가족 지급액은 그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직업이 있을 때만 소득과 연계하여 혜택을 차등화함.
- 이태리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고용과 관련된 아동수당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일하는 사람과 그 가족을 위한 것으로 설계되어 있음.
  - 한부모와 대가족을 위해서 추가로 보조금이 지급됨 이태리의 아동수당제도는 그 혜택의 범위가 자녀가 있는 가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피부양자인 배우자가 있는 가족에게도 지급되는 것이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의 아동만을 위한 수당이라 하기 어려움.

### ○ 지급대상 및 빈도

-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동수당은 부모 중 누구라도 지급받을 수 있음.
- 아일랜드와 이태리는 가족 중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지급대상이 되며, TM페인에서는 특정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이 지급대상이 됨.
- 이태리에서는 개별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함.
- 수당은 대체로 매달 지급이 됨.

### ○ 재정구조

- 고용과 관련된 아동수당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이태리는 사회분담을 통해서 이 제도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고용주가 임금총액 (payroll)의 2.48%를 분담하고, 정부는 이를 보조하고 함.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부예산에서 재원을 마련함.

<표 2> 소득연계 아동수당제도의 특징

국가	명칭	차등화			자녀연령			지급빈도	공동분담	과세
		자녀수	자녀 연령	가족형태	자녀연령	가족형태	지급대상			
오스트리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보조금 영아수당 가족보조금(Obersterreich)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없음 있음	없음 없음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어머니 혹은 아버지 어머니 혹은 아버지 어머니 혹은 아버지	매달 1년 동안 네 번 1년 동안 매달	아님 아님 아님	아님 아님 아님	
프랑스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수당 (Complement familial, CF)	없음	있음	없음	만3세이상 만21세 미만	어머니	매달	아님	아님	
아일랜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가족소득 보조금 한부모 가족 급여 사회부조를 수급하는 가족을 위한 아동수당	있음 있음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없음	근로자 사회보험 수령자	지급기간에 따라 다름	아님	아님	
이테리	가족수당	있음	없음	있음	만18세이 하	소득이 있는 자	매달	분담	아님	

출처: Bradshaw and Finch (2002), A Comparison of Child Benefit Packages in 22 Countrie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2004), The Social Security System Throughout the World-Europe 2004; KEJA (2004), Statistical yearbook of the social insurance institution,

### 3) 아동과 관련된 소득세 제도

- 소득세 제도는 세금혜택을 통해 자녀가 없는 가족으로부터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
  
- 세금 혜택들이 아동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임(bradshaw and Finch 2002).
  - 첫째,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수평적 평등을 유지하고,
  - 둘째 저소득층의 가족에게 더 큰 혜택을 줌으로써 최저소득층의 아동들 지원할 수 있음.
  
- 소득과 연관된 혜택이지만, 각 국가마다 이를 운영하는 방식은 다양함.
  - 자녀연령에 따른 차등화
  - 가족형태에 따른 차등화
  - 근로시간에 따른 차등화
  - 지급방법 및 지급대상자

#### ○ 미국

- 아동세 크레딧(Child Tax Credit, CTC)는 2005년 현재 17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 지급되며, 지급액은 가족의 형태(결혼지위)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됨(IRS <http://www.irs.gov>).
-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소득지원세(the Earned Income Tax, EITC)는 사회보장비에 대한 국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노동시장참여 동기(incentive)를 부여하기 위해 1975년에 도입된 제도로 가족의 소득수준과 아동 수에 따라 국가로부터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음(refundable federal income tax credit).

## ○ 영국

- 아동세크레딧(Child Tax Credit, CTC)과 근로세크레딧(Working Tax Credit, WTC)은 소득세에서 일정액을 감면(tax reduction)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수당을 지급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임(<http://www.direct.gov.uk>).
- 아동세크레딧은 아동이 있는 가족의 90%가 혜택을 받음.
  - 아동이 있는 가족의 연소득이 58,175파운드이하이면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음.
  - 크레딧의 금액은 가족의 연소득과 아동 수 등에 따라 다양화됨. 특히, 1세 미만의 아동이 있을 경우는 지급액이 증가함.
- 근로세 크레딧(Working Tax Credit)은 1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족에게 적용됨.
  - 근로세크레딧(Working Tax Credit)을 받기 위해 부모 중 한 사람은 적어도 주당 16시간 이상 일해야 함.
  - 이 제도는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혜택이 다르며 아동의 연령이 고려된 보육비 혜택이 함께 포함됨. 그 예로 한 주에 보육비가 100파운드가 소요되면, 이 비용의 70%인 70파운드가 지급됨. 그러나 최종 혜택은 전체 가족 소득에 따라 달라짐(Parkinsons' Disease Society 2005<sup>9)</sup>).
  - 영국의 근로세크레딧은 양부모 가족이나 한부모 가족 모두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을 양육하는데 부가적 지원이 필요하고 인정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임금과 함께 지급함.

---

9) Parkinson's Disease Society(2005), Working Tax Credit, <http://www.parkinsons.org.uk>, 2006년6월20일 검색

## ○ 캐나다

- 아동세급여금(The Canada Tax Benefit, CCTB)은 18세 이하의 아동을 둔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CRA <http://www.cra-arc.gc.ca>).
- 저소득층을 위한 전국아동급여보조금(The 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 NCBS)이 이에 포함됨<sup>10</sup>).
- CCTB는 기초급여(Basic benefit)와 NCBS로 구성되며 매달 지급됨.
  - 기초급여는 2006년 6월 현재 아동 당 102.33캐나다달러가 지급되며, 세번째 아동부터는 추가적으로 7.16캐나다달러가 지급됨.
  - 7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 당 20.25캐나다달러가 지급됨.

## ○ 호주

- 호주의 가족세급여 (Family Tax Benefit, FTB)은 아동의 양육을 보조하기 위한 가족세급여A(Family Tax Benefit Part A)와 생계 부양자가 1명인 가족 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족세급여B(Family Tax Benefit Part B)로 나뉨(ATO <http://www.ato.gov.au>;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2004).
- 가족세 혜택A(Family Tax Benefit Part A)
  - 만 20세 이하의 부양자녀를 가진 가정에 적용. (전업학생일 경우는 만 24세까지; 청소년 수당을 받지 않는 만 21세 미만의 구직 자녀도 포함). 가족의 수입이 32,485 호주 달러 이하일 경우 자산조사가 면제됨.
- 가족세 급여B(Family Tax Benefit PartB)

---

10) <http://www.cra-arc.gc.ca>

- Part B는 부모 중 한 사람만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한부모 가족을 포함), 특히 5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함.
- 2차 소득자의 연 소득이 18,947호주달러 미만이고 자녀가 만 5세 미만인 경우; 2차 소득자의 소득이 연 14,421 호주 달러 미만이고 자녀가 만 5세 이상 18세 이하인 경우 Part B에 의거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한부모 가족은 자산조사 면제.

<표 3> 아동과 관련된 소득세 제도

국가	명칭	소득에 고용여부 근로시간 자녀수에 자녀연령 가족형태 따른 에 따른 에 따른 에 따른 에 따른 에 따른							지급 대상
		차등화	차등화	차등화	차등화	차등화	차등화	차등화	
호주	가족세급여 A (family tax benefit A)	있음	없음	있음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주 보호자/ 주 과세 대상자
	가족세급여 B (family tax benefit B)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주 과세 대상자
캐나다	캐나다 아동세 크레딧 (Canada Child Tax Credit, CCTB)	있음	없음	있음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자녀의 양육에 책임이 있는 자
	전국아동급여보조금 (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 NCBS)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없음	있음	없음	자녀의 양육에 책임이 있는 자
영국	근로세 크레딧(WTC)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없음	없음	없음	피고용인
	아동세 크레딧(CTC)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부모 혹은 보호자
	아동세 크레딧(CTC)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세금환불수표의 일부로
미국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있음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있음	피고용인
									해마다 환불 수표로

자료: Bradshaw and Finch (2002), A Comparison of Child Benefit Packages in 22 Countrie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2004), The Social Security System Throughout the World-Europe 2004. Perkinson's Disease Society(2005), Working Tax Credit, <http://www.parkinsons.org.uk>; <http://www.direct.gov.uk>; <http://www.cra-arc.gc.ca/http://www.irs.gov>

## 나. 일본, 프랑스, 핀란드 사례

- 일본, 프랑스, 핀란드를 아동수당제도의 사례연구로 선정한 이유는,
  - 일본은 북미국가나 유럽국가와는 달리 1970년대 전반에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한 국가이며, 아시아 국가에서 아동수당제도가 어떻게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 판단함.
  - 프랑스의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논의가 1930년대부터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그 도입 배경의 일부로 출산율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
  - 1940년대에 도입된 핀란드의 아동수당제도 배경에는 자녀가 있는 가족과 없는 가족 간의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정의 실현과 여성의 지위향상이 있었음.

### 1) 일본의 아동수당제도

#### 가) 일본의 아동수당제도의 특징

- 본래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의 고저(高低)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보편주의적 제도임. 그러나 일본의 아동수당제도는 소득제한이 있는 선별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점.
- 아동수당제도의 지급범위가 최근에 확대되고 있지만 오랜 기간 축소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

<표 4> 일본의 아동수당제도의 변천

년도	제도의 연혁	지급대상 아동의 범위		수당 월액 (아동 1인당)	급부 총액
1972년	제도 발족 제3자녀 이후를 대상: 의무교육 종료 전(15세)	의무교육 종료 전	제3자녀 이후	3,000엔 ※1975년부터 5,000엔 (인플레이션 때문)	1,690억 엔 (1976년도) 1,659억 엔 (1982년도)
1986년	제2자녀 이후로 확대, 의무교육취학 전	의무교육취학 전	제2자녀 이후	제2자녀 3,500엔 제3자녀 이후 5,000엔	1,485억 엔 (1984년도)
1992년	제1자녀까지 확대, 3세미만 수당액 증액	3세미만	제1자녀 이후	제1·2자녀 5,000엔 제3자녀 이후 10,000엔	1,709억 엔 (1994년도)
2000년	의무교육취학 전까지 확대 [확대분의 아동에 관한 급부 재원] 전액 공비(년소부양공제 부분폐지에 따른 증세분)	의무교육취학 전			4,036억 엔 (2001년도)
2001년	소득제한을 완화하여, 지급율을 대폭인상 (72.5% →85.0%)	의무교육취학 전			4,298억 엔 (2002년도)
2004년	초등학교 제3학년 수료 전까지 확대 [확대분의 아동에 관한 급부 재원] 전액공비(배우자특별공제 부분폐지에 따른 증세분)	초등학교 3년 수료 전			6,425억 엔 (2005년도)
2006년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로 확대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7,253억 엔(2006년도)

-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성중립적인 제도이지만 일본의 경우는 남성세대주 중심으로 설계되어있는 점.
- 일본의 아동수당제도는 아버지가 수급권을 갖는 제도로서 구상되었고 현행 아동수당법에 있어서도 부모가 자녀를 감호(監護)하는 경우에는 주요 생계유지자인 쪽을 수급권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나) 2006년 현재, 일본의 아동수당제도의 구조

- 제도의 목적
  - 아동양육가정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며, 더불어 다음 세대의 사회를 책임질 아동의 건전육성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함 (아동수당법 제1조).

□ 현행 아동수당제도의 개요

	개정 전		개정 후 (2006.4월부터 실시)
지급대상연령	초등학교 제3학년 수료 까지	⇒	초등학교졸업 전까지
소득제한 (정령사항)	780만엔 피용자 수입기초(연간) (자영업자 등 596만엔) 부부와 아동 2인 세대의 경우	⇒	860만엔 피용자 수입 기초(연간) (자영업자 등은 780만엔) 부부와 아동 2인 세대의 경우
비용부담 (공비부분)	국가 2/3, 지방 1/3 (별도 사업주 부담있음)	⇒	국가1/3, 지방 2/3 약1,310만 명
지급대상 아동 수 약 940만명			약1,310만명

※ 수당액은 현행과 동일(제1자녀, 2자녀 : 5,000엔/월 액, 제3자녀 이후 :10,000엔/월액)

□ 재원방식

- 0-3세

피고용인	자영업자 등
사업주부담: 7/10 국가: 1/10 지자체: 2/10	사업주 부담없음. 국가: 1/3 지자체: 2/3

○ 3세-12세

피고용인	자영업자 등
국가: 1/3 지자체: 2/3	국가: 1/3 지자체: 2/3

※ 공무원: 소관 관청이 전액 부담.

행정체계

- 아동수당법에 의하면 아동수당수급자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그 수급자격과 아동수당액에 대해 주소지의 시정촌장의 인정을 받아야 함. (법 제7조)
- 인정을 받은 수급자격자에 대해 시정촌장은 아동수당을 지급함(법 제8조)

## 2) 프랑스의 아동수당제도

### 가) 프랑스의 아동수당제도의 특징

- 프랑스 아동수당제도는 임금상승의 억제와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에서 1932년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피고용인 가족을 중심으로 도입됨. 1939년부터 2자녀이상을 둔 가족에게 지급됨.
- 1977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의 자산을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급여를 지급하는 가족보조금을 도입함.
- 프랑스는 보편주의적 아동수당제도와 자산조사에 의한 수당제도를 모두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아동수당의 수급자격은 아동의 수에 의해 결정됨.

- 1999년 프랑스의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1명의 자녀를 둔 가족은 전체 가족의 22.5%이며,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은 31%임(INSEE 2004). 1명의 자녀를 둔 모든 가족은 아동수당을 수급할 수 없게 됨.

<표 5> 프랑스 아동관련 수당의 변천

연도	종류	적용범위	자녀수	자산조사여부
1913	대가족을 위한 수당	모든 가족	5명 이상	X
1925	대가족을 위한 수당	모든 가족	3명 이상	X
1928	홀로된 여성과 고아보험	사회분담	3명 이상	n.s*
1932	아동수당	피고용인	1명 이상	X
1939	아동수당	모든 가족	2명 이상	X
1965	세금공제	모든 가족	1명 이상	X
1970	고아수당	고아	1명 이상	n.s
1977	가족보조금	모든 가족	3명 이상	O

\*n.s: 이용가능하지 않는 자료

자료: Gauthier and Monna (2004)

#### 나) 2006년 현재, 아동수당제도의 구조

- 아동수당제도의 목적
  - 아동을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임(Embassy of France, [www.info-france-usa.org](http://www.info-france-usa.org)).
- 현행 아동수당의 개요
  - 아동수당(Allocations familiales)
    -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임. 아동수당은 해당 아동이 만20세 이하까지 지급됨.
    - 2006년 현재 2명의 자녀를 둔 가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117.71유로이며, 3명을 둔 자녀를 둔 가족에게는 268.53유로가 지급됨. 그 이상

의 자녀를 둔 가족에게는 1명의 자녀가 늘어날 때마다 150.82유로가 추가되어 지급됨.

- 아동수당은 자녀수와 연령에 따라 수당의 금액이 달라진다.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의 아동이 11세가 되면 32.37유로를, 16세가 되면 57.53유로를 더 지급함.

○ 가족보조금(Complement familial, CF)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에게 지급되는 자산조사를 근거한 수당으로 자녀의 수급연령 기준은 만3세 이상 만21세 이하임. 2006년 현재 153.22유로임.

○ 고정수당(Flat-rate allowance)

- 고정수당은 기본적으로 3명 이상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지급됨.
- 해당 아동이 만20세에 이르면 그때부터 만21세가 되기 직전까지 1년 동안 지급할 수 있음. 2006년 현재 급여액은 74.74유로임.

<표 6> 프랑스 아동관련 수당 및 급여액

수당의 종류	급여액 (2006년 현재, 월, 유로)	자산 조사
<b>1. 아동수당(Allocations familiales)</b>		
·2자녀	117.71(141,252원)	X
·3자녀	268.53(322,236원)	X
·자녀가 증가할 때마다	150.82(180,984원)	X
·11-16세 아동의 증가액	33.11(39,732원)	X
·16세 이상 아동의 증가액	58.86(70,632원)	X
<b>2. 고정비율수당(flate-rate allowance)</b>	74.43(89,316원)	X
<b>3. 가족보조금(Complement familial, CF)</b>	153.22(4,039,200원)	○

자료: [www.cleiss.fr/docs/regimes/regime\\_france/an.a1.html](http://www.cleiss.fr/docs/regimes/regime_france/an.a1.html)

□ 수급자 규모

- 2004년 현재 아동수당을 수급하는 가족 수는 4,813,000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3자녀 이상을 둔 가족에게 지급하는 가족보조금을 지급하는 가족 수는 909,000로 나타나고 있음.

<표 6 > 수급 가족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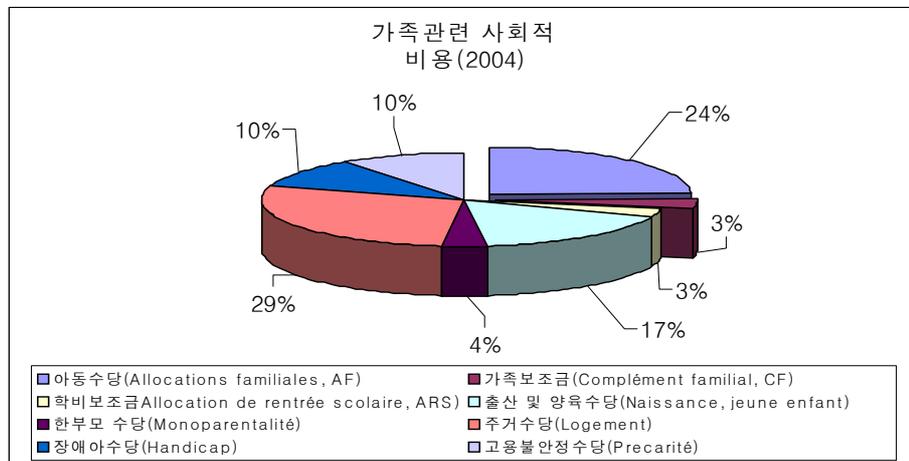
(단위: 1,000)

종류	2001	2002	2003	2004
아동수당(Allocations familiales, AF)	4,736	4,756	4,782	4,813
가족보조금(Compl?ment familial ,CF)	944	922	915	909
전체	5,680	5,678	5,697	5,722

자료:<http://www.cnaf.fr/gestionhome/servlet/ServletDisplayFrameSet?codeOrga=001&URL=%2Fweb%2FWebCnaf.nsf%2FVueLien%2FDON>. 2006년6월10일 검색

□ 재원방식

- 프랑스의 가족관련 수당으로 고용주가 임금총액(payroll)의 5.4%, 국가는 일반예산의 1.1%를 지출함(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2004).



자료:<http://www.cnaf.fr/gestionhome/servlet/ServletDisplayFrameSet?codeOrga=001&URL=%2Fweb%2FWebCnaf.nsf%2FVueLien%2FDONESANNUELLES%3Fopendocument>, 2006년6월10일 검색

- 2004년 가족과 관련하여 전국가족관련 수당 기금(National Fund for

Family Benefits, 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NCAF<sup>11)</sup>)이 담당하는 비용(social expenditure)는 약 60,128,040백만원(50,106.7백만유로)임.

- 그 중 2자녀 이상이 있는 가족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총 14,038,320백만원(11,698.6백만유로)로 전체비용의 24%를 차지함.
- 3자녀 이상을 둔 가족에게 지급되는 가족보조금은 1,889,520백만원(1,574.6백만유로)로 전체 비용의 3%를 차지함.
- 이 2종류의 수당은 전체의 26.5%를 차지하고 있어서 NCAF 비용 중 주거수당(29%)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7> 소요비용

(단위: 백만, 유로)

종류	2001	2002	2003	2004
아동수당(Allocations familiales, AF)	11,086.2	11,257.7	11,447.5	11,698.6
가족보조금(Compl?ment familial, CF)	1,565.9	1,554.6	1,556.3	1,574.6
학비보조금(Allocation de rentree scolaire, ARS)	1,351.3	1,353.1	1,338.4	1,370.3
출산 및 양육수당(Naissance, jeune enfant)	7,711.2	7,999.4	8,134.8	8,647.8
한부모 수당(Monoparentalite)	1,680.8	1,751.2	1,825.2	1,927.5
주거수당(Logement)	12,731.2	13,371.3	13,331.2	13,939.2
장애아수당(Handicap)	4,593.0	4,835.9	5,073.8	5,339.0
고용불안정수당(Precarit?)	4,559.9	4,859.1	5,058.6	5,609.8
전체	45,279.5	46,982.2	47,765.7	50,106.7

자료: <http://www.cnaf.fr/gestionhome/servlet/ServletDisplayFrameSet?codeOrga=001&URL=%2Fweb%2FWebCnaf.nsf%2FVueLien%2FDONESANNUELLES%3Fopendocument>, 2006년6월10일 검색

□ 행정기관

11) 아래의 행정기관 참조바람.

- 전국가족관련 수당 기금(National Fund for Family Benefits, 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NCAF)은 산하에 122개의 가족관련 수당 기금(CAF)지부를 두고 있으며, 총 35,000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 (ADECRI 2005).
- 전국가족관련 수당기금은 고용주들, 노동조합대표자들, 가족협회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구성됨. 이 위원회는 가족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경영에 참여는 하지만, 주요 정책결정은 국가에 의해 이루어짐.

### 3) 핀란드의 아동수당제도

#### 가) 핀란드의 아동수당제도의 특징

- 핀란드에서 1930년대 아동수당은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등장 (Hillamo, 2002). 1948년 아동수당법이 제정되면서 보편적 형태를 가짐.
- 1976년 세금제도가 가족을 바탕으로 한 세금제도에서 개인세금제도로 변화함.
- 1994년 가족을 위한 세금감면 혜택 폐지로 현재 가족을 위한 세금혜택이 없음.
- 한부모 가족에 대한 추가적 급여가 지급함으로써 양부모가족과 한부모 가족의 소득의 재분배 효과 고려함.

<표 8> 핀란드의 아동관련 수당의 변천

연도	수당	적용범위	자녀수	자산조사여부
1897	홀로된 여성과 고아보험	사회적 분담	n.s*	n.s
1943	대가족을 위한 아동수당	모든 가족	4자녀이상	o
1948	아동수당법제정	모든 가족	1자녀이상	o
1974	대가족을 위한 아동수당폐지	-	-	-
1976	소득세계혁	모든 가족	1자녀 이상	x
1994	가족을 위한 세금감면 (tax deduction) 폐지	-	-	-

\*n.s: 이용가능하지 않는 자료

자료: Gauthier and Monna (2004)

#### 나) 2006년 현재, 아동수당제도의 구조

아동수당제도의 목적

- 아동을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임

현행 아동수당의 개요

- 아동수당은 만17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지급되며, 급여수준은 가족의 형태와 자녀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됨.

- 2006년 현재 아동수당은 아래 <표 9>와 같으며,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달에 아동당 36.60유로가 추가됨.

- 아동수당은 세금이 부가되지 않으며, 급여액은 생활비 상승에 따라 국가에서 급여액이 증가함(KELA 2004).

<표 9> 자녀수에 따른 아동수당의 급여액(2004-2006)

자녀수	급여액(월, 유로)
1자녀	100.00(약120,000원)
2자녀	110.50(약132,600원)
3자녀	131.50(약157,800원)
4자녀	151.50(약181,800원)
5자녀이상	172.00(약206,400원)

출처: KELA (2004), *Statistical yearbook of the social insurance institution*, Helsinki.

□ 수급자 규모

- 2004년 현재 아동수당을 수급한 아동은 1,039,967명이며, 이는 전체 인구의 19.9%를 이룸.
- 한부모 가족의 아동은 157,377명으로 아동수당을 수급할 수 있는 전체 아동의 15.1%를 이룸.
- 지난 10년 간 아동수당을 수급한 한부모 가족의 아동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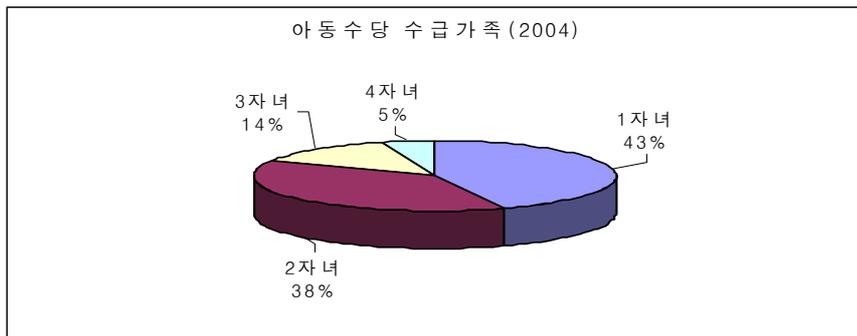
<표 10>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1993~2004)

(단위: 명, %, 세)

연도	전체수	전체인구비율	전체 (%)	연령				한부모 가족의 아동	
				0-2	3-6	7-15	16	전체수	전체 아동 중 비율
1993	1,097,166	21.6	100	17.3	23.1	53.2	6.4	..	..
1994	1,097,840	21.6	100	17.3	23.6	52.8	6.3	136,166	12.4
1995	1,097,449	21.4	100	17.0	23.8	52.9	6.3	142,888	13.0
1996	1,093,815	21.3	100	16.7	24.0	53.0	6.3	147,502	13.5
1997	1,090,108	21.2	100	16.3	24.0	53.4	6.4	150,566	13.8
1998	1,083,348	21.0	100	15.8	23.9	53.6	6.7	153,950	14.2
1999	1,072,206	20.7	100	15.5	23.6	54.1	6.8	156,358	14.6
2000	1,063,680	20.5	100	15.6	23.3	54.4	6.7	157,145	14.8
2001	1,054,230	20.3	100	15.7	22.7	55.1	6.5	158,139	15.0
2002	1,046,920	20.1	100	15.6	22.4	55.6	6.4	159,173	15.2
2003	1,041,906	20.0	100	15.6	22.1	55.9	6.3	156,965	15.1
2004	1,039,967	19.9	100	15.8	21.9	55.6	6.7	157,377	15.1

출처: KELA (2004), *Statistical yearbook of the social insurance institution*, Helsink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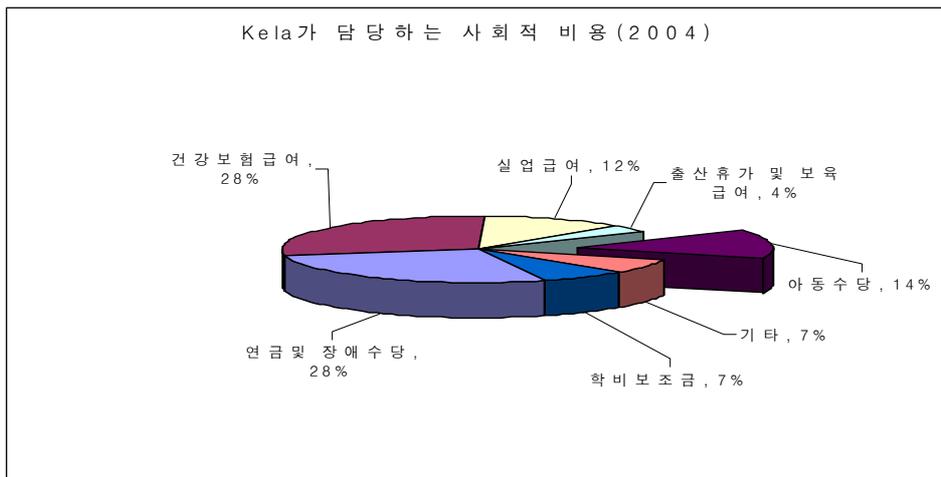
- 아동수당을 지급한 가족의 자녀수 구성을 보면, 1자녀가 있는 가족이 전체 지급가족의 43%, 2자녀 38%, 3자녀 4%, 4자녀가 5%로 나타나고 있음.



자료: Pentti, K. (2006)

□ 재원방식

- 국가의 예산으로 100% 충당함.
- 2004년 현재 아동수당으로 사용된 총 비용은 1429.0백만유로이며, 아동당 평균 114.5유로가 지급됨.
- 2004년 사회보험원(Kansanelakelaitokos,<sup>12)</sup> the Social Insurance Institution)이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담당하는 비용은 102억2천만유로이고, 이중 아동수당은 1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출처: KELA (2004), *Statistical yearbook of the social insurance institution*, Helsinki.

□ 행정기관

- 행정적으로 아동수당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사회보험원(Kansanelakelaitokos, the Social Insurance Institution)임.

- KELA는 1937년 설립되었으며, 국회의 감독을 받고 있음. KELA는

12) 이후부터는 KELA로 사용함.

100여 종류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급여를 다루고 있음.

### 3. 아동수당제도의 도입방안

- 아동의 사회권,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 인구사회학적 변화라는 3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아동수당제도의 유형과는 무관하게 아동수당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을 의무교육 학령인 만15세까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아동수당의 급여액은 아동의 기본식료품비용인 월10만원으로 함.(박영창 2005).

<표 9> 아동수당제도의 도입방안

형태	적용범위	급여액	장점	단점	비고
보편주의	만15세 아동이 있는 모든 가족에게 수급자격 부여	월10만원	-모든 아동이 수급한다는 점에서 아동의 사회권,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 인구사회학적 변화의 3가지 측면이 모두 고려되는 유형임 -자녀가 있는 가족과 없는 가족 간의 소득의 분배 가능성.	-진체 소요예산이 큼	-출생순위별 급여 차이 고려 -한부모가족에 대한 추가급여 고려 -현재 6세미만의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고려)
소득연계방식 (자산조사)	일정수준의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부여	월10만원	-저소득층 중심의 아동지원 -보편주의보다는 소요예산이 절감될 수 있음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이 특정계층에만 한정됨 -전체 아동의 사회권실현과 인구사회학 변화 대응에 어려움	-출생순위별 급여 차이 고려 -한부모가족에 대한 추가급여 고려 -현재 6세미만의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 고려)
혼합형	보편주의와 소득연계방식 혼합	기초급여: 월5만원 자산조사: 월5만원	-아동이 있는 모든 가족에게 기초급여를 제공 -저소득층에게 기초급여와 더불어 추가급여 제공 -자녀가 있는 모든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아동의 사회권 실현가능 -저소득층아동에 대한 추가지원으로 사회적 지원의 재분배	-행정비용 커질 수 있음	-출생순위별 급여 차이 고려 -한부모가족에 대한 추가급여 고려 -현재 6세미만의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에 대한 고려)

\*아동세그레딧(child tax credit):

- 가구소득, 자녀수, 연령, 출생순위 등에 따라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짐.
- 자녀가 있는 가족으로부터 자녀가 없는 가족으로의 소득재분배 가능함.
- 이를 위해서는 전체가족소득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함.
- 행정비용이 커질 수 있음.

## 참 고 문 헌

- 권영복 (2003). 아동의 권리에 대한 법적 고찰. 아태공법연구 11, 265-297.
- 김수정 (2002). 가족수당의 제도 정치와 여성의 사회적 권리-영국의 사례. 페미니즘 연구.
- 강철희.홍현미라 (2003). 복지권에 관한 비교연구-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19(1),135-160.
- 김형식 (1995). T.H.Marshall의 시민적 권리에 관한 소고. 한국사회복지학 26, 77-109.
- 대통령자문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2004).
- 박순우 (1995). T.H.Marshall의 시민권적 복지론의 재조명. 사회복지정책(창간호), 71-82.
- 보건복지부 (2005).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5.12.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4).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희망투자 전략-빈곤 아동, 청소년 종합대책. 제 49회 국정과제회의 자료.
-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2006). 아동백서, 중장기 아동정책 및 국가행동계획 연구 정책 공청회 자료집
- 재정경제 위원회 (2005).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 2005.11
- 안치민 (2003). 복지권의 구성과 성격. 한국사회복지학 55, 5-25.
- 여성부 (2006). 2006년 보육사업 안내.
- 윤진수 (2005). 아동권리협약과 한국 가족법. 국제인권법 8, 1-46.
- 이삼식 외 (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2005-30(2).
- 이재인, 김선미, 김은정 (2005). 소외계층 가족의 자녀양육지원 정책연구.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정책연구 05-2.
- 장혜경, 이미정, 김경미, 김영란 (2004). 저출산시대 여성과 국가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40-15.
- 박영창(2005). 저출산 관련 정책평가 및 입법과제. 한국법제연구원.
- ADECRI(2005), *The French Social Protection System*, ADECRI, Paris, <http://www.adecri.org>
- Austrian Tax Office(2006), Family Tax Benefit, <http://www.ato.gov.au>.
- Bock, Gisela and Thane, Pat (1994), *Maternity and Gender Policies: Women and the rise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s, 1880-1950s*, Routledge, New York.
- bradshaw, J, and Finch, N. (2002), *A Comparison of Child Benefit Package in 22 Countries*,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 Canadian Revenue Agency(CRA)(2006), Your Canadian Child Tax Benefit, <http://www.cra-arc.gc.ca>.
- Chesnais, Jean-Claude(2005), Population movement and policy in France , 저출산 대책 수립을 위한 국제공동 정책연구 No.8

CLEISS(2006), *The French Social Security System*, CLEISS, <http://www.cleiss.fr>.

CNAF(2006), Bénéficiaires tous régimes des prestations légales Métropole et DOM, <http://www.cnaf.fr>. 2006년6월10일 검색

CNAF(2006), Dépenses tous régimes des prestations légales Métropole et DOM, <http://www.cnaf.fr>. 2006년6월10일 검색

Directgov (2006), Understanding tax credits, <http://www.direct.gov.uk>.

Embassy of France(2001), *Family Policy in France*, <http://www.info-france.usa.org>

*Family Policy and Services* (2002), Helsinki, Finland: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http://www.stm.fi/Resource.phx/eng/subjt/famil/index.htm>

Gauthier, A. H. (1996), *The State and the Family: A Comparative Analysis of Family Policie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Clarendon Press, London.

Gauthier, Anne H. and Monna, Berenice (2004), *Family Allowance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Historical Landmarks*, <http://www.socil.ucalgary.ca/FYPP/images/DOCUMENTS/FA-Chronology.doc>

Hiilamo, Heikki (2002), *The Rise and Fall of Nordic Family Policy?: Historical Development and Changes during the 1990s in Sweden and Finland*,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re for Welfare and Health, Helsinki.

INSEE(2004), *Tableaux de l'Economie Française 2004-2005*, INSEE, Paris.

Internal Revenue Service(IRS), <http://www.irs.gov>. 2006년6월15일 검색

Kahn, Alfred and Kamerman, Sheila B.(eds) (1978), *Family Policy: Government and families in fourteen countries*,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KELA (2004), *Statistical yearbook of the social insurance institution*, KELA, Helsinki.

Macnicol, John (1980), *The movement of family allowances, 1918-45: a study in social policy development*, Heinemann, London.

OECD(2004), *Benefits and Wages: OECD indicators*, OECD, Paris.

OECD(2005),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OECD, Paris.

Pedersen, Susan(1993), *Family, Dependence, and the Origins of the Welfare State: Britain and France, 1914-1945*,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Pentti, K. (2006), 아동수당을 수급하는 가족수, KELA, Helsinki.

Perkinson's Disease Society(2005), *Working Tax Credit*, <http://www.parkinsons.org.uk>.

Roddis, S. and Tzannatos, Z. (1999) 'Family Allowances', *Social Protection Discussion Paper Series*, the World Bank.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2004),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Europe-2004*, <http://www.ssa.gov>.